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천안]지방도691호 석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나. 위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611-23 일원
-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진단 1식
- 라. 추정금액: 금69,100,000원(금육천구백일십만원)
- 마. 기초금액: 금69,100,000원(추정가격 62,818,182원 + 부가가치세 6,281,818원)
-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다.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3.(목) 17:30 ~ 2026. 7. 29.(수) 10:00
- 나.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자세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및 교육이수 등 증빙서류[책임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교육이수 수료증 등]를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마.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 바.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041-635-7422)
-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416)

2026. 7. 23.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